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1 ~ p2	인건비	기본급	763,053	719,509	43,544	0 봉급 ◦4급 2,468,800*1명*12월 = 29,626 ◦5급 2,243,900*3명*12월 = 80,781 ◦6급 1,929,300*5명*12월 = 115,758 ◦7급 1,537,600*7명*12월 = 129,159 ◦8급 1,197,300*1명*12월 = 14,368 ◦기능7급 1,373,900*1명*12월 = 16,487 ◦기능8급 1,295,200*8명*12월 = 124,340 ◦기능9급 1,043,900*4명*12월 = 50,108 0 봉급조정 ◦560,627,000원*24/1,000 = 13,456 0 상여금 ◦기말수당 574,083,000원*1/6 = 95,681 ◦정근수당 574,083,000원*1.95/12 = 93,289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공무원 봉급 - 정원을 기준으로 200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 ☞ 전년 수준의 2.4%를 내년 봉급에 계상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 - 기말수당 : 월 봉급액의 50% (연4회 - 3, 6, 9, 12월 계상) - 정근수당 : 직급별 월 봉급액의 50%~100% (연2회 - 1,7월 계상)
p2	인건비	수당	236,145	200,454	35,691	0 초과근무수당 ◦5급 9,088원*3명*55시간*12월 = 17,995 ◦6급 7,711원*5명*55시간*12월 = 25,447 ◦7급 6,919원*7명*55시간*12월 = 31,966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 직원 초과근무수당 (별표 2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2 ~ p3	인건비	수당	236,145	200,454	35,691	◦8급 $6,2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55\text{시간} \times 12\text{월} = 4,092$ ◦기능7급 $6,919\text{원} \times 1\text{명} \times 55\text{시간} \times 12\text{월} = 4,567$ ◦기능8급 $6,200\text{원} \times 8\text{명} \times 55\text{시간} \times 12\text{월} = 32,736$ ◦기능9급 $5,560\text{원} \times 4\text{명} \times 55\text{시간} \times 12\text{월} = 14,679$ 0 가족수당 ◦배우자 $30,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0.78 \times 12\text{월} = 8,424$ ◦존·비속 $20,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1.48 \times 12\text{월} = 10,656$ 0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47,7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0.19 \times 4\text{회} = 1,088$ ◦고등학교 $369,7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0.15 \times 4\text{회} = 6,655$ 0 정근수당 가산금 ◦25년 이상 $130,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12\text{월} = 15,600$ ◦20년 이상~25년 미만 $11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12\text{월} = 7,920$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12\text{월} = 5,760$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text{원} \times 8\text{명} \times 12\text{월} = 5,760$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족수당(4인한도) - 배우자 : 30,000원, 부양가족 : 20,000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자녀 학비보조수당(1급지 적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 추가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인 경우 월 10,000원을 추가, 25년이상인 경우 월 30,000원을 추가 지급)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3 ~ p4	인건비	수당	236,145	200,454	35,691	0 의사수당 ◦4급 100,000*1명*12월 = 1,200 ◦5급 80,000*3명*12월 = 2,880 ◦6급 60,000*5명*12월 = 3,600 ◦7급 이하 50,000*21명*12월 = 12,600 0 대우공무원수당 ◦4급 대우 2,243,900*6/100*2명*12월 = 3,232 ◦5급 대우 1,929,300*6/100*4명*12월 = 5,557 ◦6급 대우 1,537,600*6/100*8명*12월 = 8,857 ◦7급 대우 1,197,300*6/100*1명*12월 = 863 ◦8급 대우 1,043,900*6/100*1명*12월 = 752 0 관리업무수당 2,468,800*11/100*1명*12월 = 3,259	☞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월봉급액의 6% 지급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4급) 관리업무수당 (월 봉급액의 11%)
p4		정액 급식비	46,800	46,800	0	0 정액급식비 130,000원*30명*12월 = 46,800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 월정액 13만원을 지급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4	인건비	교통 보조비	45,720	45,720	0	0 교통보조비 ◦ 4·5급 : 140,000*4명*12월 = 6,720 ◦ 6·7급 : 130,000*13명*12월 = 20,280 ◦ 8·9급 : 120,000*13명*12월 = 18,720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실비보상
p4		명절 휴가비	71,761	66,671	5,090	0 명절휴가비 574,083,000원*1/12*75/100*2회 = 71,761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실비보상(설날 및 추석 : 월 봉급액의 각 75%씩)
p4		가계 지원비	119,601	111,118	8,483	0 가계지원비 574,083,600원*1/12*250/100 = 119,601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실비보상 - 월 봉급액의 각 50%씩(4,5,8,10,11월 지급)
p4		연가 보상비	38,273	35,440	2,833	0 연가보상비 574,083,600원*20/300 = 38,273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실비보상 - 월 봉급액×1/24×연가보상일수(최대 20일 한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4 ~ p5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305,237	255,437	49,800	0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500,000원*12월 = 6,000 ◦환경정비 화분구입 200,000원*8개소*4회 = 6,400 ◦간행물 구독 · 정기분 8,000원*3종*8개사*12월 = 2,304 · 수시분 100,000원*8개사*4회 = 3,200 ◦소규모 물품구입 및 수선 3,374,250원*4회 = 13,497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8,000원*40명*12월 = 3,840 ◦녹화테이프 구입(본회의장) 2,500원*200개 = 500 ◦속기녹음용 카세트테이프 구입 1,200원*600개 = 720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 400,000원*12월 = 4,800 0 주요업무보고서 2,000,000원*2회 = 4,000 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40,000원*50부 = 2,000 0 의회수첩 제작 10,000원*700부 = 7,000	☞ 의회사무국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 의회 환경조성용 화분구입비 ☞ 의회 및 의회사무국 정보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기분, 수시분 간행물 구독료 ☞ 부서운영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 및 수선비 ☞ 각종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의회의장 표창 물품 구입비 ☞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따른 녹화테이프 구입비 ☞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따른 속기녹음용 카세트테이프 구입비 ☞ 의회 및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 ☞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 ☞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유인비 ☞ 시의회 의원용 의회수첩 제작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5 ~ p6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305,237	255,437	49,800	0 회의록 제작 2,500,000원*8회 = 20,000 0 의회소식지 제작 2,500원*6,500부*4회 = 65,000 0 의회소식지 편집 100,000원*20면*4회 = 8,000 0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 백서 발간 200부*150,000원 = 30,000 0 제4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200부*100,000원 = 20,000 0 제5대 전반기 의회 홍보물 제작 2,000부*5,000원 = 10,000 0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400,000원*4명*4회 = 6,400 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70,000원*4명*2회 = 560 0 의원수행 연수교육비 500,000원*8명*2회 = 8,000 0 의정활동 홍보 30,000,000원*1식 = 30,000	☞ 의정활동에 따른 회의록 제작비 ☞ 의회소식지 제작비 ☞ 의회소식지 편집비 ☞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 기록보존 백서 발간비 ☞ 제4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보존 제작비 ☞ 제5대 전반기 의회 각종 홍보물 제작비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 의원수행 연수교육비 ☞ 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홍보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illegible]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7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305,237	255,437	49,800	0 급량비(특근매식비) 50,000원*15명*12월 = 9,000 0 시설장비유지비 ◦음향기기 300,000원*7개소 = 2,100 ◦냉·난방기 120,000원*12대 = 1,440 ◦모사전송기 150,000원*3대 = 450 ◦카메라 300,000원*3회 = 900 0 차량선박비 ◦의전용 7,474,000원*1대 = 7,474 ◦업무용 5,448,000원*2대 = 10,896	☞ 초과근무에 따른 직원 급식비 ☞ 의회 시설장비 유지비 ☞ 의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8	여비	국내 여비	43,500	39,150	4,350	0 기본업무추진여비(30명) 100,000원*30명*12월 = 36,000 0 의원수행 공무원여비 100,000원*10명*3일 = 3,000 0 타 시·군 의회 견학 공무원여비 100,000원*15명*3일 = 4,500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1인당 100,000원 직원(30명) 출장여비 ☞ 의회 행사시 의원 수행을 위한 여비 ☞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수행 여비
p8		국외 여비	19,500	19,500	0	0 국외여비 1,300,000원*5개 위원회*3명 = 19,500	☞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여비
p8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3,000	3,000	0	0 국장 3,000,000원 = 3,000	☞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제8조>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900	900	0	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00원*30명 = 900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정원 100명까지 1인당 30,000원)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8 ~ p9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6,000	26,000	0	0 주요업무추진 의원간담회 2,000,000원 = 2,000 0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1,600,000원 = 1,600 0 내방인 접대비 2,400,000원 = 2,400 0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 1,000,000원*3회 = 3,000 0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5,000,000원 = 5,000 0 의회사무국 시책추진비 6,000,000원 = 6,000 0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0,000원 = 3,000 0 폐회연 행사 3,000,000원 = 3,000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의원 간담회 경비 업무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경비 의회 업무관련 방문자 접대경비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비 의회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의회 주요 시책 추진비 의회 개원 15주년 기념 행사비 연말 의회 폐회연 행사비
p9		기타 업무 추진비	5,400	4,800	600	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350,000원*12월 = 4,200 ◦전문위원실 100,000원*12월 = 1,200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정원 30인이하 월 350,000원 - 정원 5인이하 월 100,000원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9	직무 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9,000	9,000	0	0 4급 350,000원*1명*12월 = 4,200 0 5급 100,000원*3명*12월 = 3,600 0 6급 50,000원*2명*12월 = 1,2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경비
p9 ~ p10		직급 보조비	52,920	52,920	0	0 4급 400,000원*1명*12월 = 4,800 0 5급 250,000원*3명*12월 = 9,000 0 6급 155,000원*5명*12월 = 9,300 0 7급 140,000원*7명*12월 = 11,760 0 8급 105,000원*1명*12월 = 1,260 0 기능7급 140,000원*1명*12월 = 1,680 0 기능8,9급 105,000원*12명*12월= 15,120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6 규정에 의거한 실비보상
p10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15,600	15,600	0	0 대민활동비(6급이하) 50,000원*26명*12월 = 15,600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한 대민활동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10	자산 취득비	도서 구입비	3,000	5,000	△2,000	0 도서구입(자료실) ◦전문서적 30,000원*100종 = 3,000	☞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비
p10	자체 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	27,200	30,530	△3,330	0 속기용 녹음기 구입 300,000*2대 = 600 0 위원회 보고용 마이크 구입 600,000원*1식 = 600 0 디지털 운전등사기 구입(대체) 5,000,000원*1대 = 5,000 0 컴퓨터 구입(대체) 1,500,000원*14개 = 21,000	☞ 의회 회의내용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 상임위원회 각종 보고용 마이크 구입비 ☞ 의회 의사운영에 필요한 운전등사기 구입 ☞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11	의회비	의정 활동비	541,200	541,200	0	0 의원 의정활동비 $1,100,000\text{원} \times 41\text{명} \times 12\text{월} = 541,200$	☞ 지방자치법제32조 및 시행령 제15조 별표 5 및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경비
		월정 수당	328,000	229,600	98,400	0 회의참석 수당 $100,000\text{원} \times 41\text{명} \times 80\text{일} = 328,000$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국내 여비	26,076	26,076	0	0 의정활동 공무수행여비 $81,000\text{원} \times 41\text{명} \times 3\text{일} = 9,963$ 0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여비 $131,000\text{원} \times 41\text{명} \times 3\text{일} = 16,11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국외 여비	70,590	70,590	0	0 의장, 부의장 $1,800,000\text{원} \times 2\text{명} = 3,600$ 0 의원 $1,300,000\text{원} \times 39\text{명} = 50,700$ 0 교류도시 방문 $54,300,000\text{원} \times 30 / 100 = 16,290$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208,800	208,800	0	0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0,000\text{원} \times 41\text{명} = 196,80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000\text{원} \times 12\text{명} = 12,000$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금액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는 활동기간 동안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액	산 출 기 초	예 산 요 구 사 유
	목	세 목					
p12	의회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99,600	99,600	0	0 의장 2,500,000*1명*12월 = 30,000 0 부의장 1,250,000*1명*12월 = 15,000 0 상임위원장 910,000원*5명*12월 = 54,600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기준 제8조에 근거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의회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0	6,600	1,000	0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4,000,000원*1회 = 4,000 0 경기도 시·군 의회 100,000원*12월 = 1,200 0 경기도 동부권 시·군 의회 200,000*12월 = 2,400	☞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일반 보상금	민간인 해외 여비	13,000	13,000	0	0 국제교류사업 민간해외여비 1,300,000*10명 = 13,000	☞ 의회의 국제교류 사업시 필요한 민간인 해외여비